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2022.06.14.

인도 운영중 유료도로 지분인수
본 타당성조사

과 업 지 시 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I. 과업지시서.....	1
1. 개요.....	1
2. 과업기간.....	1
3. 과업내용.....	2
4. 과업의 일반원칙.....	4
5. 과업수행 방법.....	8
6. 과업성과품 제출.....	8
7. 보안대책.....	9
II. 예정공정표.....	11

I. 과업지시서

1. 개 요

□ 과업명 : 인도 운영중 유료도로 지분인수 본 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총 3개 대상사업)

- 1) Delhi-Meerut 고속도로
- 2) Pobandar-Dwarka 고속도로
- 3) Chakeri-Allahabad 고속도로

※ 현재 지분인수 후보사업의 사업권자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과업 착수시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목적

- 인도는 민간투자사업(PPP)으로 시행된 유료고속도로의 운영개시 전후 지분매각이 매우 활발한 시장으로 인도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O&M社와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지분인수 (brownfield acquisition)를 통해 인도 도로시장에 진입해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업은 운영중 또는 운영예정인 상기 3개 고속도로사업의 기업실사를 통해 1개 사업에 대하여 최적의 지분인수 의사결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본 과업을 통해 현지 O&M기업을 벤치마킹하여 O&M 수행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인수대상 사업의 사업권자가 조달한 타인자본에 대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 가능성 및 글로벌투자자들의 환율변동위험 헤징 전략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3. 과업내용

□ 기업실사

- 대상 사업의 재무, 회계, 세무, 법률 등 관련분야 실사(due diligence)
 - 재무·회계·세무 등 관련 자료 상세분석을 통한 재무성과/안정성 검토
 - 모든 계약서(O&M 등) 및 협약서(실시협약, 대출약정서 등) 검토
 - * EPC 하자 보증 기간 내 사업의 경우, 하자 관련 EPC 계약서 검토
- 실사를 통해 발견한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투자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협상전략 등) 제시
- 대상 사업에 대한 NBO(Non-binding offer) 제출에 필요한 제반 지원(필요시*)
 - * 후보사업 사업권자와의 협의 진행정도와의 연동

□ 지분인수 재무 타당성 분석(모델링)

- 연도별 현금흐름 추정
- 현금흐름 안정성 검토 및 투자수익성 분석
 - 안정성 지표 : DSCR,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
 - 수익성 지표 : IRR, NPV, 회수기간 등
-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 등
 - 환헤징 방안 적용, 리파이낸싱 시나리오 포함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Termination Payment) 분석
- 지분인수 적정 인수가격(안) 산출
- Tax 측면에서의 인수구조 비교검토 및 최적안 제시
- 조세제도(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세, 과실송금 등) 및 대상사업 회계/세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지분인수전략 수립(지분인수 이후 포트폴리오 확대 등 사업추진전략)

- 대상사업 O&M 과업범위 검토 및 수행 난이도 등 평가
 - O&M 수행 보고서 분석
- O&M 비용 적정성 검토
- 인수 후 O&M 수행방안* 제시
 - 글로벌기업(Cube Highways 등) 또는 현지기업의 O&M 실행전략 (O&M 효율성 제고방안 등) 벤치마킹
 - 환헤징, 리파이낸싱 등 수익확보·확대 전략 등
- * 단계별 100% 지분인수의 경우 사업주 O&M 수행
- 중기(3~5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

□ 법률 검토

- 대상국의 PPP관련법, 외국인 지분인수 투자와 관련 법률·제도 전반적 검토
 - 과소자본세제, 외환, 차입규제 등 자본구조 관련 제약조건 검토 포함
 - 지분인수 계약체결-승인-사업주(컨소시엄) JV 설립-청산 관련 조건, 절차, 소요비용 및 시간 등 법제도 검토 및 추진방안 제시
- 인수구조(투자형태)와 관련한 세제·계약조건 등 법률검토
- 기타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불가항력 사건 발생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사례분석
 - PPP사업 및 지분인수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례분석

□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고속도로 자산 상태평가)

- 도로 제반 시설물 현황조사 및 상태 점검(현지 기술인력 활용 포함)
 - 포장, 교량, 암거, 비탈면, 배수시설, 영업시설 등 제반 관리대상 시설의 상태확인 및 결함 또는 기능발휘여부 조사
 - 건설기간 검측감리 보고서 검토
 - 준공검사 결과 및 하자보수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 확인

- 도로 O&M 수행이력 및 여건 검토
 - 운영기간 감리보고서 검토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차종별)교통량, 교통사고 등 교통운영 현황 검토
 - 재해,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여건 및 이력조사

< 사업제안자 수행 >

- 인수구조(투자형태)에 대한 내부(사업제안자 측면) 법률검토
- 기업실사, 재무타당성 분석 및 법률 검토 지원
 - 대상사업 사업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 자금제조달 관련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협의 추진
- O&M 비용 및 수행조건(적정성) 검토, O&M 수행방안 수립 지원
- 도로 제반 시설물 현황 조사 및 상태 점검(과업수행자와 공동수행)
- 도로 O&M 수행이력 및 여건 검토(과업수행자와 공동수행)
 - O&M 수행체계(조직, 예산, 업무추진방식 등) 전반 검토 포함

※ 본 과업을 통해 지분인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협상 및 지분 인수계약 체결에 필요한 재무·법률 자문은 본 과업과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될 예정임

4.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을 외부 전문기관(현지업체 포함)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 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5. 과업수행 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 대상사업의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

6.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 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II. 예정공정표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비고
1. NBO 제출지원 (필요시)							
2. 사업실사							
3. 재무적 타당성 검토 (모델링)							
4. 지분인수 전략수립							
5. 법률 검토							
6. 기술적 타당성 검토 (고속도로 자산 상태평가)							
7. 성과품 작성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업진 도율	당기	15	25	20	25	15	
	누적	15	40	60	85	10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